

우리나라는 왜 표준시를 동경 135°의 지방평균시를 사용하고 있는가?

1. 표준시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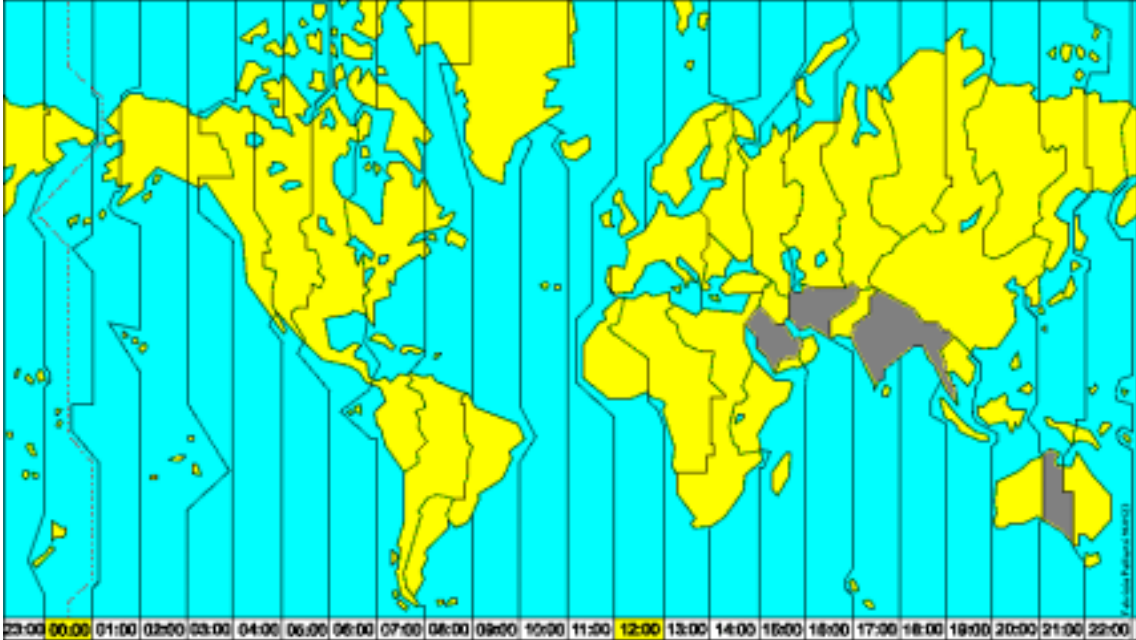


그림 1 표준시(standard time)

대부분의 나라가 그 나라 고유의 표준시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원래 시간은 태양의 일주운동(日周運動)을 기준으로(즉, 태양에 대한 지구의 자전운동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태양시이다. 따라서 각 지방의 태양시는 그 지방의 경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태양이 그 지방의 자오선(子午線)을 지나는 시각, 즉 남중하는 시각을 일남중시각(日南中時刻)이라고 하는데, 일남중시각은 같은 나라에서도 **경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면 울릉도에서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에 인천에서는 아직 남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울릉도의 지방평균시와 인천의 지방평균시는 서로 다르게 된다. 그러나 한 나라에서 이와 같이 각기 다른 시각을 쓴다면 매우 불편하므로, 대개는 어떤 특정 지방의 평균시를 취하여 전국이 공통으로 쓰게 되는데, 그것을 표준시라고 한다.

2. 표준시의 기준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경도0°을 기준으로 15°씩 나누어 표준경도선을 설정하고 이 표준경도선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7.5°범위는 같은 시간으로 설정한다.

3. 현재 우리나라의 표준시에 관한 법률

제정 86.12.31 법률제3919호

표준시는 동경 135도의 자오선을 표준자오선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광절약시간제의 실시를 위하여 연중 일정기간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법률) 표준자오선변경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4. 우리나라표준시에 대한 변천과정

표준 자오선	사용기간	관련법령
동경 127도 30분	1908년 4월 1일 ~ 1911년 12월 31일	관보 제 3994호(칙령 제5호)
동경 135	1912년 1월 1일 ~ 1954년 3월 20일	조선총독부 관보 제 367호 (고시 제 338호)
동경 127도 30분	1954년 3월 21일 ~ 1961년 8월 9일	대통령령 제 876호 (1954년 3월 17일)
동경 135도	1961년 8월 10일 ~ 현재	법률 제 676호(1961년 8월 7일) 법률 제 3919호(1986년 12월 31일)

조선 시대에 동경 120°를 표준자오선으로 했던 것을 1910년(융희 4년) 4월 1일 종래의 11시를 12시로 고침으로써 동경 135°의 지방평균시를 택한 것이다. 그런데 동경 135°선은 울릉도 동쪽 350km 지점을 남북으로 지나는, 즉 한국의 영토를 지나지 않는 선이다. 따라서 한국표준시는 동경 127°선이 지나는 서울의 지방평균시보다 32분 정도 빠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때 대통령령으로 1954년 3월 21일부터 동경 127°30'을 표준자오선으로 하여 표준시를 고쳐 사용했으나, 1961년 8월 10일부터는 다시 동경 135°선을 표준자오선으로 하고 과거와 같은 표준시를 사용하게 되었다.

5. 다른 나라의 표준시에 대한 현황

OECD 국가중에 자국을 통과하는 자오선을 표준시로 쓰지 않는 나라는 없다.

물론 동서로 길이가 긴 나라에서는 여러 개의 표준시를 쓰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1879년 캐나다와 미국은 S.플레밍의 제안에 의하여 두 나라가 공통으로 5개의 표준시를 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5개의 표준시는 각각 서경 60°, 75°, 90°, 105°, 120°의 지방평균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 중부(+3시 45분), 노퍽제도(+2시 30분), 미얀마/코커스퀼링제도(-2시 30분), 네팔(-3시 15분), 니코바르제도/래카다이브제도/스리랑카/앤다만제도/인도(-3시 30분), 아프가니스탄(-4시 30분), 이란(-5시 30분), 캐나다의 뉴펀들랜드(-12시 30분), 마르케샤르제도(-18시 30분)등의 국가도 그리니치 표준시와 15분이나 30분 단위의 차이가 나는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콩·마카오·이집트·터키·레바논·이탈리아·우루과이 등에서는 여름 동안은 일광절약을 이유로 정규의 표준시보다 1시간 빠른 시각을 표준시로 쓰기도 한다. 이런 제도를 일광시간절약제(日光時間節約制), 일명 서머타임(summer time)이라 한다. 한국도 1948~1960년, 1986~1988년에 이 제도를 쓴 적이 있다.

6. 현재의 표준시에 대한 의견

표준시 변경에 대한 투표결과 75%가 넘는 네티즌들이 127도 30분으로의 표준시변경을 지지하고 있다

현행을 고수하는 측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른 나라의 표준시와 정수 (1시간 2시간..)로 하는 것이 좋고, 이를 바꾸게 되면 사회 경제적인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현행의 표준시를 변경하자는 측의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조순형 의원은 "대한제국때 우리나라는 표준자오선을 동경 127도 30분을 사용했으나 일본이 식민지 통치의 편의를 위해 동경 135도로 바꾸었다"면서 "한때 127도 30분으로 원상 회복됐으나 지난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35도로 변경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표준자오선을 변경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실제 태양시와 같은 시간대를 사용하는 이점은 물론 국가의 민족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제국때 우리나라는 표준자오선을 동경 127도 30분을 사용했으나 일본이 식민지 통치의 편의를 위해 동경 135도로 바뀌었다. 그리고 광복 후 우리나라는 다시 127.5도로 표준시를 변경했습니다만, 6.25 전쟁 때 미군의 참전과정에서 당시 아시아 쪽의 미군 본부가 일본에 있었는데 일본에 있는 본부와 우리나라의 시간이 맞지 않아 불편하다는 이유로 미군 쪽에서 표준시를 일본의 동경135도로 맞춰 사용했다.

⇒한편 표준시간 30분의 오차는 사주팔자까지 틀리게 한다는 사실이다. 30분 사이를 두고 연월일시가 변경되는 때에 태어난 사람의 사주팔자는 물론 모든 사람의 신체적 생체리듬도 오차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 * 대한민국헌행법령 WEB
- * [매일경제] 2000/12/04
- * [한국천문연구원 게시판]
- * 홈페이지 - 국운회복운동-